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21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0월 5일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2.10.21.)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윤성신)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의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재산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해당조문 신설(안 제10조제2항)

나. 사용·수익허가→사용허가, 실경작자→농업인 등 개정된 법령과 일치하게 용어 정비(안 제14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9조)

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배정 명시(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2022. 8. 17. ~ 9. 6.):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장석현)

가. 개정 취지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10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를 “법 제10조의2” 로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사항¹⁾을 반영하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재산 기준을 조례로 위임²⁾함에 따라 안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재산 기준을 명시함
- 안 제14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9조의 사용·수익허가→사용허가, 실경작자→농업인 등 개정된 법령과 일치하게 용어를 정비함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에³⁾ 따라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배정 명시(별표 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21. 4. 20. 개정>: 제10조를 신설하고 기존 제10조를 제10조의2로 함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개정 2022. 4. 20.>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3)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1346호(2022. 2. 28.)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 제도 개선(의결서)’방안 시달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 붙임 1. 관련자료 1부.
- 2. 관계법령 1부.

[별표 1]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구의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²)

구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 원
구 본 청	99	38.88	38.88	17.92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m ² ×사용인원
		4~2.4m ² /인	2.6~1.5m ² /인	2~1.2m ² /인	1.6~1m ² /인	1.2~0.9m ² /인	
상황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회의실과 겸용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 ~ 200명		200명 이상		
		0.43m ² / 인	0.40m ² / 인		0.33m ² / 인		
	엘리베이터	(12.87 ~ 19.6m ²) × 대수					
식 당		1.63m ²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m ²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m ² ×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m ² ~0.2m ² ×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m ² / 인	11.52m ² / 인		8.64m ² / 인		
자 료 실		(0.3~0.4m ²) × 공무원수					
창 고		0.72m ² /인 ~ 0.85m ² /인					
전 산 실		9.79m ²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m ²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 ²		800m ²		1,000m ²	
	층장비실	6.6m ²		8.4m ²		10.2m ²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40%]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2. 구의회 청사

(단위 : m²)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원 실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구 위원회 수 : 3개	
회 의 실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m ² 이상		
	회의실	의원 수 × 3.3m ²	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m ²	위원회 수 : 3개	
부 속 공 간	사무국장실	38.88 ~ 64.0m ²		
	사 무 실	직원 수 × 7.2m ²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m ²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m ²	
		기 자	50m ²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m ²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m ²	
		직 원	직원 수 × 2m ²	
		방청객	방청객 수* × 2m ²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m ²	
화 장 실	구 : 44~46m ²			
기 타	예비실(50m ²)을 1개소이상 확보	참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